

감 사 위 원 회

시 정 요 구

제 목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 부적정

관 계 기 관 인재개발원

내 용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(이하 ‘인재개발원’이라 함)은 「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라 강당, 강의실, 운동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업무를 수행 중이며,

아래 [표1]과 같이, 같은 조례 제8조(사용료의 감면)에서는 사용자에게 따라 사용료 전액 또는 50%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6조(사용료의 반환)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취소 요청일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비율을 달리하여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
【표1】 사용허가 대상자별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

① 사용료 감면 규정

구분	사용자
전액 감면	· 서울시 각 기관 · 서울시 직원 단체·동호회
50% 감면	· 국가기관, 공공단체 ·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자

② 사용료 반환 규정

구분	반환 비율
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취소요청	·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
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취소요청	· 납부된 사용료의 75% 반환
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요청	· 납부된 사용료의 50% 반환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요청	· 반납하지 않음

하지만 인재개발원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이 원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해 50%를 감면하여 징수해야 함에도,

‘A’(○○○○○과)의 운동장 사용(‘17.7.17.)과 서울특별시 ‘B’²¹⁾의 강의실 2개소 사용(‘15.12.28.)에 대하여,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였고,

《 참 고 》

○ 사용료 50%감면 규정 적용 시 사용료

- ‘A’ : 125,000원(운동장 5시간 사용)

- ‘B’ : 577,000원 = 162,500원(강의실 9시간 사용) × 2개소(대강의실) + 252,000원(냉·난방비)

또한 아래 [표2]와 같이 테니스장 및 강의실 사용에 있어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요청이 있었으므로, 납부된 사용료의 50%(테니스장 : 15,000원, 강의실 : 293,750원)를 반환하여야 했으나, 75%로 과오 반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.

【표2】 인재개발원 시설사용 취소에 따른 부적정 반환 현황

(단위 : 원)

연 번	시설명	예약(취소)자	사용 예정일	납부금 (사용료)	사용 취소 요청일	반환금 (사용료의 75%)	과오반환금
1	테니스장	‘을’	‘16.10.22.	30,000	‘16.10.20.	22,500	7,500
2	강의실	‘C’	‘14.05.10.	587,500	‘14.05.08.	440,000	146,250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【 조치할 사항 】

인재개발원장은 시설사용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, 미납된 사용료 702,000원과 과오 반납한 153,750원에 대하여 부과·징수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요구)

21) ‘B’은 서울시 ‘D’의 위·수탁기관으로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 기타 공공기관임.